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5. 2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황동연

가.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2009. 2. 6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의 구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마포구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재산세 부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등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 내용

- 1) 공정시장가액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21조제1항)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 2)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안 제21조의2제3호나목)
주택의 과세표준을 6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을 기준

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4까지로 규정

2) 세부담의 상한 조문 신설(안 제27조의 2)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며,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의 경우 해당 연도 재산세 상승률은 전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원 이하는 100분의 110, 6억원 초과는 100분의 130을 넘지 않도록 상한 규정을 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명금길)

○ 동 조례안은 현행 재산세 과세 표준을 매년 시가 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함에도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 부담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 개정된 주요내용>

(1)안 제21조제1항에서 종전에는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에서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 부담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음

(2) 안 제21조제2항 중 “각호의”를 “각 호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나목에서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을 위해 현행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에서는 과세표준을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6천만원 이하는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는 기본 6만원에 6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기본 19만5천원에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는 기본 57만원에 3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4로 하향 조정하였음

(3) 안 제27조제2항을 신설하여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되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도록 세 부담의 상한을 하향 조정 하였음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2009. 2. 6 지방세법 제187조, 제188조 및 제195조제2항이 일부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의 구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의거 마포구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재산세 부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